##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642

발의연월일: 2021. 9. 23.

발 의 자: 송언석 · 김용판 · 안병길

金炳旭・박덕흠・최형두

태영호 • 곽상도 • 정희용

김영식 · 구자근 의원

(11일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교통시설설치·관리자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의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 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.

그런데, 2021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업무담당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행정, 통신 등 비전문 직렬이며,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대국민 행정서 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함.

특히, 2018년 시행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(자살, 교통사고, 산재사고 3대 분야 사망자 감축) 일환으로 전문조직이 신설(보건복지 부 자살예방정책과) 되었고,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 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및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.

이에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전문

성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(안 제2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교통안전 전문교육등의 실시) ① 지정행정기관 및 교통행정기관, 교통시설설치·관리자 등은 교통안전지식 보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3조의2(교통안전 전문교육등의 실시) ① 지정행정기관 및 교통행정기관, 교통시설설치 · 관리자 등은 교통안전지식 보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. ②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